

어르신의료복지시설 운영(요양)

1 기본 현황

□ 사업개요

회 계	일반회계		
사업기간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연례반복		
사업내용	○ 장기요양등급이 있는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요양시설 운영을 지원		
사업비 (당해년도)	8,279,198천원	(국비)	(시비)8,279,198천원
		기타 (예산 외) [구비]	[기타]

□ 사업 담당자

실·국	부서명	과 장	팀장	주무관
복지정책실	어르신복지과	김정범 2133-7400	권고은 2133-7419	지세희 2133-7420
복지정책실	어르신복지과	김정범 2133-7400	권고은 2133-7419	이정원 2133-7424
복지정책실	어르신복지과	김정범 2133-7400	권고은 2133-7419	이정도 2133-7423
복지정책실	어르신복지과	김정범 2133-7400	노동영 2133-7412	이왕기 2133-7413

※실국 및 부서명은 예산서 기준으로 작성되어 현재부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2 예산 설명

□ 예산 총괄

(단위 : 천원, %)

구 분	2022예산액 (A)	2023예산액 (B)	증감 (B-A)	
				(B-A)*100/A
계	(x-) 7,960,729	(x-) 8,279,198	(x-) 318,469	(x-) 4
사무관리비	(x-) 18,750	(x-) 28,800	(x-) 10,050	(x-) 54
시책추진업무추진 비	(x-) 1,800	(x-) 6,000	(x-) 4,200	(x-) 233

민간위탁금	(x-) 2,590,133	(x-) 2,930,535	(x-) 340,402	(x-) 13
사회복지사업보조	(x-) 5,350,046	(x-) 5,313,863	(x-) △36,183	(x-) △1

□ 산출근거

과목구분	2023년 예산내역	
사무관리비	○ 수탁자선정심의회 9명*4회*200,000원	= 7,200천원
	○ 좋은돌봄인증 홍보, 컨설팅 21,600,000원	= 21,600천원
시책추진업무추진비	○ 어르신생활시설운영 업무추진 6,000,000원	= 6,000천원
민간위탁금	○ 시립노인요양시설 - 등급외 요양수가 지원 20명*66,320원*365일 - 비급여액(식비)지원 562명*1,500원*365일*3식 - 춘계부식비 및 김장비 500명*7,000원*2회 - 위문금 지원 500명*10,000원*4회 - 추가 인건비 192,499,000원 - 종사자 처우개선비 800,000,000원 - 학대피해노인 일시보호 39,520원*2,000일(24명*90일) - 신규위탁 시립요양원 운영비 및 인건비 342,875,000원 - 개보수 노인요양시설(송파) 입소자 이송 81,900,000원	= 2,930,535천원 = 484,136천원 = 923,085천원 = 7,000천원 = 20,000천원 = 192,499천원 = 800,000천원 = 79,040천원 = 342,875천원 = 81,900천원
사회복지사업보조	○ 구립 법인 노인요양시설 - 등급외 요양수가 지원 15명*66,320원*365일 - 비급여액(식비) 지원 1,000명*1,500원*365일*3식 - 춘계 부식비 및 김장비 650명*7,000원*2회 - 위문금 지원	= 2,736,463천원 = 363,102천원 = 1,642,500천원 = 9,100천원 = 26,000천원

과목구분	2023년 예산내역	
	650명*10,000원*4회	
- 종사자처우개선비	=	610,000천원
610,000,000원		
- 갈 곳 없는 어르신 보호	=	85,761천원
▷ 등급외 요양수가 지원	=	72,621천원
3명*66,320원*365일		
▷ 비급여액(식비)지원	=	13,140천원
3명*4,000원*365일*3식		
○ 노인요양시설 인증	=	2,577,400천원
- 인증보조금 지원	=	1,080,000천원
54개*20,000,000원		
- 대체인력지원	=	466,000천원
466,000,000원		
-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원	=	1,031,400천원
3,438명*300,000원		

3 사업 설명

□ 사업목적

- 저소득 및 거동불편 어르신을 요양시설에서 거주하도록 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노후의 안정된 생활 도모

□ 사업근거

- 노인복지법 제 47조(비용의 보조)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(비용의 보조)
- 서울특별시 장기요양기관 좋은돌봄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
- 2022년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(보건복지부 지침)
- 2022년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지원 계획(어르신복지과-2962, 2022.2.10.)
- 2022년 좋은돌봄인증.시립요양시설 대체인력 지원사업 계획(어르신복지과-5151, 2022.3.11.)

□ 사업내용

- 사업기간 : 2023. 1월 ~ 12월
- 지원대상 : 노인요양시설 80개소, 서울형좋은돌봄인증 시설 54개소
 - 총 516개소 중 시립,구립,비영리법인 운영시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
 -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노인의료복지시설 54개소 인증보조금 및 대체인력 지원

○ 지원내용

- 요양보험제도 시행('08. 7월) 이전 입소 등급외자 지원
 - 등급외자 요양수가 지원비 : 66,320원/일(3등급 수가, 요양수가 5개년 평균 인상률 3.55% 인상 반영)
- 입소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지원
 - 비급여액(식비) : 1인 1식 1,500원
 - 위문금 : 분기별 1회 10,000원(설날, 어버이날, 추석, 연말)
 - 춘계부식비 : 1인 연간 7,000원
 - 김장비 : 1인 연간 7,000원
- 시립시설 종사자 추가 인건비 지원 : 4개소, 6명
- 갈 곳 없는 어르신 지원 : 등급외자 요양수가 및 비급여액(식비) 지원
-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
 - 기초생활수급자 우선입소시설(16개소) 및 시립노인요양시설(6개소) 종사자
- 좋은돌봄인증시설 54개소 대상 인증보조금(인센티브) 및 대체인력 지원
 - 인증 받은 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(8,000~36,000천원)
 - 요양시설 종사자 연가 및 교육시 대체인력 지원(종사자 1인당 5일)

□ 추진경위

-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('08. 7월) 관련 노인요양시설 운영 및 예산조치 계획(2008.7.4.)
- 갈 곳 없는 등급외 판정 기초수급자 어르신 보호(2011.8.11.)
- 노인요양원 서울형 인증제 도입(2015.7)
-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서울형 인증제 도입(2016.7)

□ 2023년도 추진일정

(단위 : 천원)

사업추진절차	추진기간	예산집행금액	추진세부내용
계		8,279,198	
기본계획 수립	2023.01~2023.02		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보조금, 좋은돌봄인증보조금 등 지원계획 수립
보조금 신청 및 집행	2023.02~2023.12	8,279,198	분기별 교부

4 사업효과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

2020년도	○ 요양시설 76개소 운영비 지원
2021년도	○ 요양시설 71개소 운영비 지원
2022년도	○ 요양시설 74개소 운영비 지원

□ 향후 기대효과

- 어르신 의료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시설운영 지원
- 무의탁 저소득 어르신을 보호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 노후의 안정된 생활 도모

5 최근 3년 결산 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도	최종예산	전년이월	예산변경	예산현액	집행액	차년이월	집행잔액
2019	(x-) 6,250,733	(x-) 0	(x-) Δ600,000	(x-) 5,650,733	(x-) 5,305,964	(x-) 0	(x-) 344,769
2020	(x-) 7,267,175	(x-) 0	(x-) 0	(x-) 7,267,175	(x-) 5,850,411	(x-) 0	(x-) 1,416,764
2021	(x-) 7,173,059	(x-) 0	(x-) Δ170,000	(x-) 7,003,059	(x-) 5,672,886	(x-) 0	(x-) 1,330,173